신탁계약서 및 (간이)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

칸서스자산운용㈜

1. 투자신탁의 명칭

- 칸서스 하베스트 멀티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

2. 효력발생일

- 2011. 10. 10

3. 변경사유

-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상향 조정(2등급→1등급)
- 클래스 A 및 클래스 B 판매기준 금액조건 삭제
-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변경
- 집합투자기구의 연혁, 투자운용인력, 투자신탁 재무정보,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, 운용실적, 집합투자업자의 요약재무내용, 운용자산 규모 등 통계자료 갱신

4. 신탁계약서 변경 내용

현 행	변 경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) ①~②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클래스 A 수익증권 : 적립식 투자자,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2. 클래스 A3 수익증권 : 클래스 A3 수익증권 보유자 3. 클래스 A5 수익증권 : 클래스 A5 수익증권 보유자 4. 클래스 A7 수익증권 : 클래스 A7 수익증권 보유자 5. 클래스 B 수익증권 : 임의식·거치식 투자자, 납입금액 100만원 이상 6. 클래스 C 수익증권 : 임의식·거치식 투자자, 납입금액 5억원 이상 ④(생략)	**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)** ①~②(현행과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클래스 A 수익증권 : 적립식 투자자 2. 클래스 A3 수익증권 : 클래스 A3 수익증권 보유자 3. 클래스 A5 수익증권 : 클래스 A5 수익증권 보유자 4. 클래스 A7 수익증권 : 클래스 A7 수익증권 보유자 5. 클래스 B 수익증권 : 임의식·거치식 투자자 6. 클래스 C 수익증권 : 임의식·거치식 투자자, 납입금액 5억원 이상 ④(현행과같음)

5.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	2010.8.26기준	2011.9.30기준

<table>
<tr><td>관한 사항
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5.투자운용인력</td><td>2010.8.26기준</td><td>2011.9.30기준</td></tr>
<tr><td>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종류형 구조</td><td>
<table>
<tr><th>종류별</th><th>최초설정일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클래스 A</td><td>2006.03.06</td><td>적립식 투자자, 납입금액 10만원 이상</td></tr>
<tr><td>클래스 B</td><td>2006.03.06</td><td>임의식·거치식 투자자, 납입금액 100만원 이상</td></tr>
<tr><td>클래스 C</td><td>2006.03.30</td><td>임의식·거치식 투자자, 납입금액 5억원 이상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>종류별</th><th>최초설정일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
<tr><td>클래스 A</td><td>2006.03.06</td><td>적립식 투자자</td></tr>
<tr><td>클래스 B</td><td>2006.03.06</td><td>임의식·거치식 투자자</td></tr>
<tr><td>클래스 C</td><td>2006.03.30</td><td>임의식·거치식 투자자, 납입금액 5억원 이상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td><td>2등급</td><td>1등급</td></tr>
<tr><td>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</td><td>1. 클래스 A 수익증권 : 적립식 투자자, 납입금액 10만원 이상
5. 클래스 B 수익증권 : 임의식·거치식 투자자, 납입금액 100만원 이상</td><td>1. 클래스 A 수익증권 : 적립식 투자자

5. 클래스 B 수익증권 : 임의식·거치식 투자자</td></tr>
<tr><td>13.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나.집합투</td><td>
<table>
<tr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3">지급비율(연간, %)</td></tr>
<tr><td>클래스A</td><td>클래스B</td><td>클래스C</td></tr>
<tr><td>집</td><td colspan="3">연 0.74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d rowspan="2">구분</td><td colspan="3">지급비율(연간, %)</td></tr>
<tr><td>클래스A</td><td>클래스B</td><td>클래스C</td></tr>
<tr><td>집</td><td colspan="3">연 0.74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합투자업자보수				합투자업자보수			
	판매회사보수	연 1.50%~ 0.71%	연 0.71%	연 0.71%	판매회사보수	연 1.50%~ 0.71%	연 0.71%	연 0.71%
	신탁업자보수	연 0.034%			신탁업자보수	연 0.034%		
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	연 0.016%			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	연 0.016%		
	기타비용	연 0.015%			기타비용	연 0.012%		
	총보수·비용	연 2.305%~ 1.515%	연 1.515%	연 1.515%	총보수·비용	연 2.302%~ 1.512%	연 1.512%	연 1.512%
	증	연 0.71%			증	연 1.086%		

	권거래비용	

※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,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(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)으로써 2010.03.05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※ 증권거래비용은 2010.03.05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총보수·비용 비율

클래스A	연 2.305%	클래스B	연 1.515%	클래스C	연 1.515%
클래스A3	연 2.055%				
클래스A5	연 1.805%				
클래스A7	연 1.515%				

	권거래비용	

※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,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(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)으로써 2011.09.30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※ 증권거래비용은 2011.09.30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

.

총보수·비용 비율

클래스A	연 2.302%	클래스B	연 1.512%	클래스C	연 1.512%
클래스A3	연 2.052%				
클래스A5	연 1.802%				
클래스A7	연 1.512%				

14.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	※ 상기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	※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인 15.4%(주민세 포함), 일반법인 14%		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. 재무정보	2010.8.26기준	2011.9.30기준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2010.8.26기준	2011.9.30기준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2010.8.26기준	2011.9.30기준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2010.8.26기준	2011.9.30기준
다.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2010.8.26기준	2011.9.30기준
라.운용자산 규모	2010.8.26기준	2011.9.30기준